보도 참고

* 2013년 9.17일(화) 11시 이후 보도 요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2013. 9.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 2

Ⅲ.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8

1.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 9

2. 中小→中堅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 ····· 11

3.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6

4.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 21

Ⅳ. 경제적 위상 변화 ····· 24

Ⅴ. 향후 계획 ····· 25

Ⅰ. 추진 배경

「中小 → 中堅 → 大企業」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 구축"**은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

□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가 단절**되어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

①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의 성장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지속적 졸업 회피** 가능

* 그동안 필요에 따라 일부 기준의 **보완·추가만을 지속**하여, 중소기업 기준이 복잡하고 **성장한 기업도 중소기업 잔류가 용이**

② **(칸막이식 지원)** "**중소기업은 보호·육성, 중견기업은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성장을 두려움**으로 인식

* 세제·판로·인력 등의 지원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기고 규제는 강화**되는 현실에 직면

③ **(중견기업 지원체제 미흡)** 기업의 **성장 과정에 맞는 별도의 지원 시스템 부재**로 **추가 성장의 유인과 동력을 상실**

□ **산업의 '허리층'**인 중견기업의 **취약성이 지속**되면,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경제부흥" 및 "선진경제" 실현이 곤란**

◇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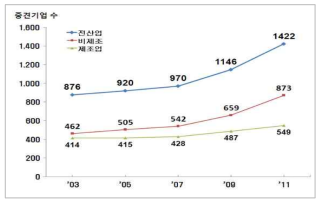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허리 역할을 복원**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群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은 시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 및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

□ 국내 중견기업은 '03년 이래 **연평균 6%** 증가하여, '11년 **1,422개사로 성장** (관계기업 1,383개 제외)



* **모든 업종에 분포**하고, 평균 매출액 2,706억원, 수출액 88백만불, 고용 580명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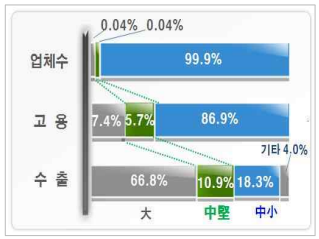
○ **고용·수출 등**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고 용 : 82.4만개** (총고용의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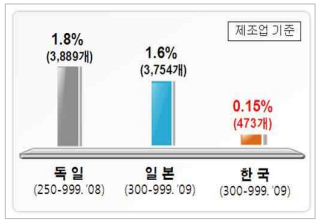
* 고용증가율('07~'11) : 中堅 5.2% ≫ 大 4.3%

- **수 출 : 603.3억불** (총수출의 10.9%)

- **총매출 : 374조원** (대기업집단 매출액 1위<225조원>를 훨씬 능가)



□ 그러나, 절대적 규모는 **대기업 계열사(1,512개)보다 적은 수준** (기업수의 0.04%)



○ 산업의 허리인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獨·日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히든챔피언 수*와 혁신역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獨 1,307**, 美 366, 日 220, 中 68 ≫ **韓國 23개** (Hermann Simon, '12.8)

2 중견기업 부문 취약 원인

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중견기업군의 **자체 혁신역량 부족**에 크게 기인

1 칸막이식 이분법적 지원체계 ➡ 성장 기피

기업의 **실질적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제외**시키고 **일시에 지원을 단절**

□ **중소기업 지원 법률은 54개***이나 **중견기업 관련 별도 법률은 없고,** 그나마 중견기업 개념이 명시된 법률도 3개**에 불과

* 기본법 1, 분야별 개별법 15개, 고용·세제·금융 등 38개 법률이 "중소기업에 한정한 지원제도"를 운용(지원사업 : 총 202개, 10.9조원 규모)

**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기술혁신법(지원사업 : 2개, 562억원)

□ 이러한 **제도 운영의 결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 또는 축소**되는 **"지원 絶壁"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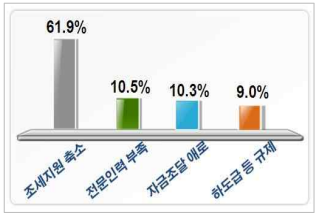
* 세제 33개, R&D·정보화 10개, 수출·판로 10개, 인력 9개, 금융 7개, 기타 8개

○ 또한,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는 **"규제 山城"에 봉착**

*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 대금 지급의무(하도급법 §13),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10일이내 개시 의무(하도급법 §16의2), 위탁기업 행위제한 14가지(상생법 §25)

□ **현장의 목소리***도 R&D투자 등 **조세지원 축소, 전문인력 부족, 하도급 의무** 등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호소

* 매출 1,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755개 대상 실태조사('13.4, 중견련)



2 성장성과 괴리된 중소기업 범위 ➡ 졸업 회피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과 결정 방식이 **"성장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다분

□ 중소기업기본법 제정('66) 이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조정으로 중소기업 울타리 내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구조**

* 업종별 규모 기준 확대 **(제조업 : 200인 → 300인)**, 택일주의(근로자 or 매출액·자본금) 도입,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500억원 → 1,000억원) 등

□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중인 **"자본금"** 지표 및 **"택일주의" 도입**('01) 등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왜곡 초래**

○ 주로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는 **자본금**으로는 **기업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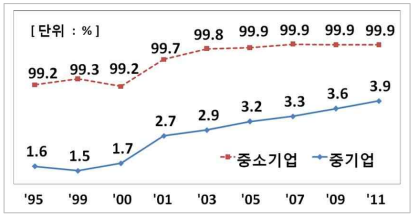
* 한국·일본과 달리 **미국 및 EU**는 **근로자를 기본 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지표**로 활용

* '09~'11년간 증감률(한은) : 중소기업 자본금 2.9% ≪ 매출액 **17.2%**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는 근로자 수 조정 등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유지 가능**

- 실제 택일주의 도입 이후에, **중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 크게 상향**

*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해도 근로자 299명 이하면 中企에 포함



□ 유예기간이 지나 완전히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면, **3년 유예기간을 재부여**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따른 성장 기피·왜곡 실태

중소기업 **졸업 이후의 지원 단절** 및 **다소 왜곡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운영으로, **성장 보다는 중소기업 잔류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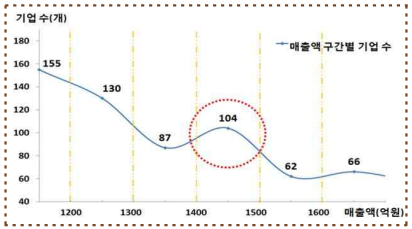
□ 중견기업 **후보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은 매우 저조 → 성장정체** 뚜렷

○ '02년 이후 창업한 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제조기업은 총 89개** ('11년말 기준)이나, 분할·외투기업 제외시 **5개사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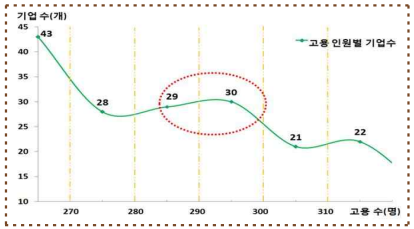
○ 특히, **매출 500억원 이상 중규모 기업** (3,153개, '11년말)의 중소기업 **졸업직전 성장중단 현상** 확인

* 매출 500억원이상 중소제조업체 수 : ('02) 670개 → ('11) 1,791개 **(1,121개↑)**
* 중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 ('01) 99.7% (**2.7%**) → ('11) 99.9% (**3.9%**)

매출액 기준 (전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 중소기업 범위 경계선상의 **10개 기업 중 3개**는 분사·고용 감축 등 **인위적 조정**을 통해 **졸업을 회피** ('12.12, 전경련)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그 동안 받아온 **공공구매·세제 등의 지원이 일순간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 성향**

○ '06~'11년간, 중견기업 중 연평균 **73개 기업이 인위적 방법** (근로자 감소 50%, 지분변동 34%)을 통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

3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취약 ➡ 추가성장 모멘텀 부족

◇ 중견기업群의 **해외시장 개척 미흡, 신성장동력 부족** 등 **자체 성장역량 미비**로 인한 **"저성장의 함정"에 노출**

◇ 그럼에도, **"중견기업 = 準 대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우선순위에서 사각지대에 위치**

* 정부 R&D 지원 비중('12) : (中小) 13.17%, **(中堅) 2.95%, (大) 6.11%**

⇒ **'80년 이후 창업**한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3개*** (부영, 웅진, 이랜드)

* 금융업 2개사 및 민영화 공기업 2개사 제외

□ **(중견기업 전반) 기업 성장 구간별로 「판로 → 고용 → 수출 → R&D」 분야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양상**

구 분	1,000-2,000	2,000-3,000	3,000-5,000	5,000-1조원	1조원 이상
매출증가율	1.5	4.3	10.8	12.9	12.1
고용증가율	-1.3	1.1	4.4	3.7	15.6
수 출 비 중	14.7	12.0	12.6	17.8	25.0
R&D집약도	1.3	2.6	1.1	1.3	1.1

* 매출·고용증가율 ('06 → '11) : % / 영업이익률·수출비중·R&D집약도('11) : %

○ **(판로) 매출 2,000억원** 단계까지 **시장 개척에 어려움** 경험

- 주로 **내수시장**에서 성장 후, 공공구매 배제 등 급격한 시장 축소에 기인 (매출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70%가 수출경험 全無**)

○ **(고용) 매출 3,000억원** 단계까지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둔화**

- 청년층 및 고급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세제 등 **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를 **기업 스스로 보전할 역량 부족**

○ **(수출) 매출 5,000억원** 단계까지 **수출비중 정체 상태**

- 수출 중견기업은 **680개 (47.8%)**이나, **수출액 1백만불 이하 수출 초보기업이 206개 (30.3%)**

○ **(R&D)** 매출액 대비 평균 **R&D 비중은 1.3%로 낮은 수준**

- **R&D 집약도** 비교 (KISTEP, '11 R&D수행 기업)에서도 중소기업 (3.36%) > 대기업 (2.25%) > **중견기업 (1.68%)** 順으로 가장 취약

⇒ 다만,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매출, 고용, 수출 등이 지속 증가하여 **자체 성장여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 **독일 히든챔피언**의 평균 매출액 ('12) : **4,890억원**

□ **(주요 업종별) 기업 수 및 고용증가율은 비제조업**이 높으나, **매출·수출·R&D집약도 등의 혁신역량은 제조업**이 월등

('07~'11년)	기업 증가율	매출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출 비중	고용 증가율
전 산 업	10.0%	9.8%	16.3%	17.7%	5.2%
제 조 업	6.5%	11.2%	17.0%	26.4%	3.8%
비제조업	12.6%	7.7%	8.6%	3.3%	6.4%

○ **(기업 분포) 제조업 549개 (38.6%)** vs **비제조업 873개 (61.4%)**

* 제조업 : 자동차(84), 식음료(74), 전자부품(63) 등 3개 업종이 40.3%
* 비제조 : 도소매(151)·출판/통신/정보서비스(122)·부동산/임대업(113)이 44.2%

○ **(매출·수출)**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취약성이 심각**

- **제조업의 평균매출 (4,277억원**, 비제조업 1,676억원)은 **獨 히든챔피언**에 육박하고, 총 수출액의 **90% 이상** (562억불)을 차지

- 그러나, **제조업**의 수출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비제조업**의 **75% (653개)**가 **내수시장에만 의존**

○ **(고용)**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저조**

- 비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은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장치 긴요

○ **(R&D)** 제조 (1.64%), 비제조 (0.7%) **모두 R&D집약도가 취약**한 바, **중견기업 전반의 R&D 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노력 필요

Ⅲ.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되, **중견기업까지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단의 칸막이를 제거**

◇ **성장 단계별 연착륙 (sliding down)을 유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

기 본 방 향

1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지향형으로 재설계**

○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범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용방식 등을 재검토

2 **"중소기업 여부"**가 아닌 **"실질적 성장 여부"**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적 지원을 지속**

○ 매출액 등 **성장성 지표**를 토대로 **정책 목적 및 수단별로 차등화된 지원전략**을 구사

3 **중견기업 추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별도 지원체제 마련**

○ **글로벌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R&D 및 수출역량 강화** 집중 지원

4 **고용안정 및 창출**을 위한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 육성 여건 조성 및 체계적 정책 추진 **법적기반 마련 등 인프라 확충**

◇ 이번 대책은 그간 제기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 희망의 **기업 성장 사다리를 연결**하고 **산업의 허리를 보강**하여, **기업 규모별·부문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함

1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1 기업성장 여부가 반영되도록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 현행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일반(규모) 기준

업 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 조 업	300인	80억원	-
건설업 등	300인	30억원	-
출판업 등	300인	-	300억원
도소매업 등	200인	-	200억원
하수처리업 등	100인		100억원
부동산업 등	50인		50억원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 충족(택일주의)

* 규모기준 초과시 유예기간 : 3년

규모 상한선

- 근로자수 : 1천명 ('01년 시행)
- 자산총액 : 5천억원('05년 시행)
- 자기자본 : 1천억원('12년 시행)
- 3년 평균 매출 : 15백억원('12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이상 출자한 기업('02년 시행)
- 관계기업('11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 미국, 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지표**(근로자·자본금·매출액), **업종별 기준, 택일주의** 등을 재검토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재검토 방향 >

①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매출액 지표로 대체** (지표 일원화)
② **택일주의 폐지** 및 **단일지표 적용 여부** 등 기준 재설계

<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현황 >

◇ **(미국)** 1,047개 세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근로자 중 한 가지만 적용

* 매출액 : 7백만$ 기준, 업종별로 0.75~35.5백만$ 적용
* 근로자 : 500명 기준, 업종별로 50~1,500명 적용(제조업은 500, 750, 1,000명)

◇ **(EU)** 종업원수 250인 미만이고, 매출액(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4천3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일본)**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 제조업 기타 : 자본금 3억엔 또는 종업원수 300인 이하

2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

○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회수는 최초 1회로 제한**

○ 유예 이후 규모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재편입**된 경우, **당해 연도별**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3 M&A를 통한 중견기업의 추가 성장 지원

○ 중견기업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이상 중소기업

⇒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 최종 확정 ('13.11)**

* **개편 방안 확정 시,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에 따른 관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향도 함께 검토**

2 中小 → 中堅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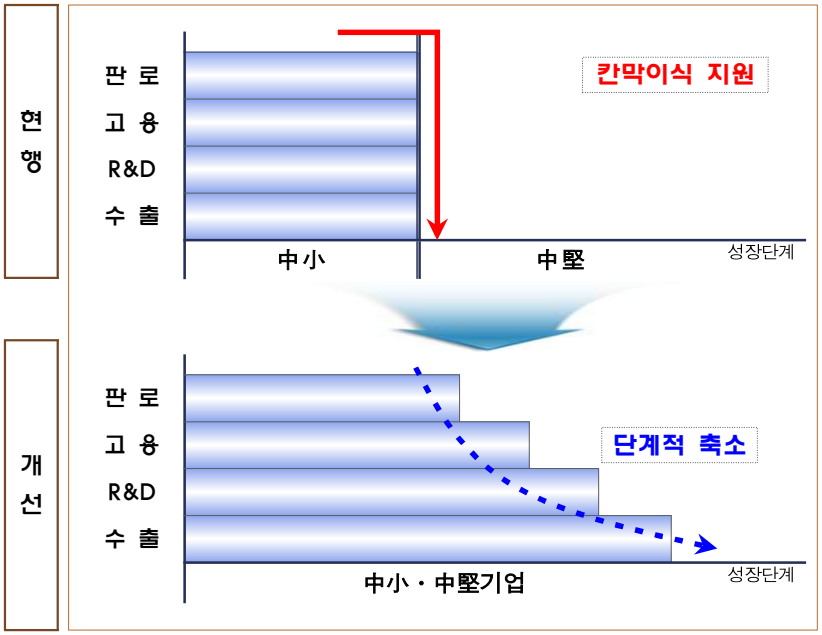
◇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

○ 기업관련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여부" → "매출액 등 성장 정도"에 비례하여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

◇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 수단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

* **중견 진입초기 단계**까지 → 급격한 시장 축소 및 인력 확보 애로
중견 추가성장 단계까지 → R&D 투자 애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 방향 >



1 中堅 진입초기 : 판로 및 고용 애로 해소

1-1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중견기업 진입 후, **매출액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및 **적합업종 적용 완화**

1 초기 중견기업의 中企간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

○ **(현황)** 중소기업 졸업시 일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202개 품목, 약 20조원)에서 퇴출됨에 따라, 매출감소 및 경영 악화

○ **(개선)** 중기간경쟁시장에 참여해 오던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참여 허용**('14.상, 판로지원법 개정)

- 다만, 정부조달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정요건의 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단계적 감축 제도'**를 함께 도입

※ 중견기업 3년간 참여요건(조달경력 및 비중 등), 단계적 감축 대상 및 비율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 구체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수준의 합리적 조정 권고

○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

○ **(개선)** 해당업종에서 전문성을 갖고 성장한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권고가 완화**되도록 **합의도출 유도**('13.하)

* 예시 : 사업 이양 → 사업 축소, 사업 축소 → 확장 자제 등 규제수준 완화

- 향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재구성時 **중견기업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1-2 일자리 유지·창출 여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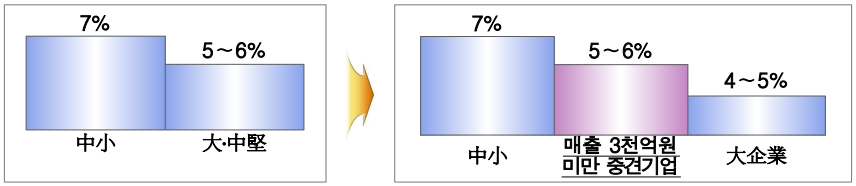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력애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일자리 유지·창출 기반 확충**

1 고용유지·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성장단계별로 차등화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

○ 현행 중소-大·중견기업의 **2단계 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하여,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 신설** ('14.1월 시행)

○ 대기업은 공제율을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유지**



2 초기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이직 애로 해소

○ **중소기업 계약학과** (전문학사·학사·석사)에 **중견기업 재직자를 일정비율 (20%이내) 포함**시키되 정부지원금은 차등 적용 ('14~)

○ **초기 중견기업** (매출 3,000억원 미만) **재직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무역 등 **글로벌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14~, 20개사, 200명)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출연(연) 파견**을 통해 R&D관련 **역량 강화 (Skill-up) 프로그램** 추진 ('14~, 10개사)

○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희망엔지니어 적금' 확대** : ('13) 2,000명 → ('14)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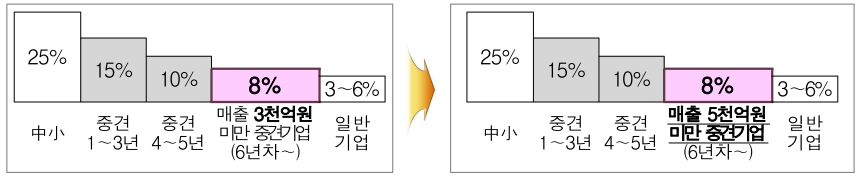
2 중견기업 성장기 : 기술혁신 역량기반 보강

R&D집약도가 저조한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1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13.하, 조특법시행령 개정)

○ **R&D 세액공제*** (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 (현행) 과세년도 기준, <中小> 25% **<中堅> 8%** <大>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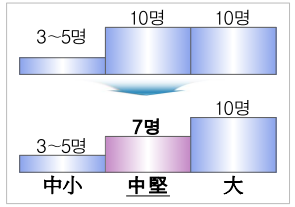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 ('14.상 기초연구법시행령 개정)

○ **(현황)** 중소기업 졸업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어, 성장에 따른 연구소 **유지·관리가 곤란**

* 전담요원 수 : <中小> 3~5명 → <中堅·大> 10명

* 전담요원 학력 : <中小> 전문대·고졸 경력자 포함 → <中堅·大> 4년제 대학

○ **(개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별도 인적 요건 구간을 신설**



* 전담요원 요건 개선안 : <中小> 3~5명 → **<中堅> 7명** → <大> 10명

-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기존 연구전담요원***은 **자격요건의 자동 승계**를 허용

* 중소기업 시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인력 (전문대·고졸 등)

3 투자·금융환경 개선 및 하도급거래 부담 완화

1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

* 벤처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펀드로,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가능

○ **중견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M&A하는 경우, **조합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허용 ('13.하, KVF관리규정 개정)

2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
: ('12) 12.9조원 → **('13) 15.1조원 (2.2조원↑)**

- 산 업 은 행 : ('12) 9.9조원 (中小 11.7) → ('13) **12조원** (中小 12.0)

*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0.3~0.5%p 감면) 등 병행

- 정책금융공사 : ('12) 3.0조원 (中小 4.0) → ('13) **3.1조원** (中小 4.1)

* 중견기업 「**연구개발기술 사업화 특별자금**」 도입 ('13. **1천억원** 조성)

○ 중견기업 금융·수출 등 **시책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민·관 성장사다리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13.11)

* 산은·코트라·수은 등 9개 기관에서 10개 지원사업 추진 (총 1,712개사 지원)

3 하도급거래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현황) 중견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는 **원사업자 의무**가 부과되나, **대기업과의 거래**는 **하도급 보호에서 제외**

○ **(개선)**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규모** (예: 6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시 보호** ('13.12, 하도급법 개정)

* 대기업-중견기업 간, 매출액 차이가 나는 중견(大)-중견기업(小) 간 적용

* 매출액 6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수 ('11년) : **1,269개** (전체의 89.2%)

3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확충**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의 도약**에 초점을 두고, **핵심분야 집중 지원**

독일 히든챔피언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히든챔피언 현황**

○ **(정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H. Simon)

○ **(분포)** 독일은 전 세계 2,734개 **히든 챔피언의 절반 (1,307개, 47.8%)**을 보유 (한국은 23개로 13위 수준)

구 분	평균 매출액	수출액 비중	R&D 집약도
獨 히든챔피언	4,890억원	62%	6.0%
韓 중견기업	2,706억원	17.7%	1.3%

◇ **독일 정부의 히든 챔피언 육성 정책 및 시사점**

주요 정책내용	시사점
1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특화분야를 발굴, 높은 R&D투자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투자 및 세제지원 확대
2 산학협력형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공급 • 대학·출연연 등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직업훈련 제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및 전문인력 지원
3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협소한 내수시장을 조기 해외진출로 만회, 각종 산업박람회·수출금융 등 제공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및 글로벌 전문기업 특화 지원
4 가족기업의 장기적 안정 경영 유도 • 독일 기업 95%가 가족기업 (평균업력 85년) →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없음	• 가업승계기업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지속 개선

1 중견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 개발, 인력, 기술협력 및 이전 등의 역량 제고**

1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투자 확대

○ 산업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R&D 투자**를 ('12) 2.95% → **('17년) 5% 수준으로 확대**

* 산업부 R&D 中, 중소·중견 지원비중 확대 : ('12) 29.4% → ('17) 50%

○ **中小-中堅기업간 기술혁신 파트너십 R&D** 신설·운영 ('14~)

- **공급망 (Supply-Chain) 협력사**, 출연硏 등이 참여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공동 개발**

*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견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협력 R&D를 통해 조속 성장을 지원 (5년간 100개 육성)

2 전문 연구인력 등의 중견기업 공급 및 유입 촉진

○ '13년부터 제외된 대기업 배정인원 ('12. 22%)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대폭 확대**

* 중견기업 배정 비율 : ('13) 6.8% (171명, 中小 1,070명) → ('14) 12% → ('15) 20%
* 활용률 (편입/배정, '12년) : (中小) 42.7% (441/1,034), (大·中堅) 103.4% (365/353)

○ **독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직업훈련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운영** ('13.9)

* 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일터 기반 학습** (work based learning) 제도

- ('13) 1차 시범사업 : **중견기업 중심 50개 선도기업** 선발 → ('14) 2차 시범사업 :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

3 연구개발 결과물의 중견기업 이전·활용 활성화

○ **중견기업 전용 원천기술 실용화 R&D 프로그램 신설**

-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미활용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출연(연) 중심의 사업화 R&D** 수행후 **중견기업에 이전** ('13.10~)

* '13년중 10개 과제 (과제당 5억원, 최대 2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 미활용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 **선급기술료를 면제**하고,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위주 계약 체결

* 범부처 기술료 징수·납부 관련 기준 표준안 마련 ('13.하)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 감면 (中小 50%, 中堅 25%)** 및 국방과학연구소 (ADD) **기관평가시 중견기업 지원실적 반영**

- **'ADD - 중견기업간 기술이전 교류회'**, 국방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 등 수요기업과 **상시 소통채널 마련** ('13.하)

*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 거래장터'**와 **타 부처 기술이전 시스템** (산업부 NTB, 특허청 Patent-MART 등) **연계 추진**

4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IP) 역량 및 인프라 확충

○ **독자적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과 R&D를 연계한 **지재권 중심 R&D (IP-R&D) 전략 수립** 지원 확대 ('13. 112억원)

○ 해외 경쟁기업·특허괴물 등과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지원센터 (IP-DESK)** 확대 ('13. 9개소 → '14. 10개소)

2 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확충

기술개발, 마케팅, 금융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중견기업 진입기	중견기업 성장기	글로벌 도약기
• 핵심 요소기술 • 글로벌 강소기업 R&D ('13. 335억원)	• 수출 유망기술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13. 1,451억원)	• 미래전략/원천기술 • 월드클래스 300 R&D ('13. 550억원)

1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 해외진출 역량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Global Highway 프로그램」** 신설·운용 ('13.하, 100억원)

* 업체별 **글로벌 역량 진단 → 글로벌화 전략(로드맵) 수립** → 업체별로 **차별화된 지원시책** (R&D·특허·마케팅 등) 연계지원

2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확대 및 성과 극대화**

* '11~'13년간 **100개사 선정** ('13. 550억원), 18개 지원기관·25개 시책을 연계하여 **기술·글로벌화·인력·컨설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

○ 300개사 선정을 **'17년까지 조기에 완료** (당초 '20년까지)하고, 글로벌 하이웨이 **우수 졸업기업**에 대해 **우선 연계지원** 추진

3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 7,000억원 규모**

○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조성** ('13.12)

* 국내 자금과 해외 국부펀드 자금 등을 매칭 출자하여 조성·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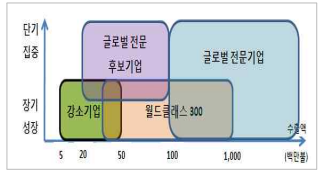
○ **「중견기업 육성 펀드」 확대 : ('13) 500억원 → ('14) 1,300억원**

* **모태펀드**에서 **최대 40%까지 출자**하고, 예비 중견기업군 및 **성장 유망 중견기업에 50% 이상 집중 투자**

3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가동

◇ **'17년까지** 세계 최고 실력을 갖춘,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 육성**

* 수출 1억불이상 기업('12) : 217개사



1 **글로벌 전문기업 특화형 지원 서비스 개시**

○ 수출 1억불 달성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전문후보기업」**을 선정하여, **4대 정책플랫폼(전략·금융·인력·마케팅)**을 제공하고,

- 현재 운영 중인 **20여개 핵심 지원 시책** (기술·무역투자·금융·인력)을 선정기업에게 **우대 집중지원**

* 국제공동 R&D 우대가점, 1:1 표준전문가 전담서비스, 한중 FTA 자문 등

○ 선정기업별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 **기업 맞춤형 애로 해소**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방안」(산업부)은 별도 발표 예정 (9월말)

2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 **포괄금융*** **적용기준**을 수출 실적 5천만불 이하 → **수출 2억불 이하 기업으로 확대** ('13.11, 한국은행 무역금융취급세칙 개정)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제공하는 **무역금융**으로 신용보증·대출승인이 용이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용

* 수출 5천만불~2억불 이하 기업 : (中堅) 132개사, (中小) 204개사

○ **수출입은행**의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확대**
: ('12) 7.8조원 (中小 15.1) → ('13) 9.0조원 (中小 16.5)

*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中小) 250→400억원, (中堅) 350→600억원

* 히든챔피언사업 등을 통한 중견기업 금리우대 : ~0.5%p 감면

○ **무역보험 확대** : ('12) 14조원 (中小 15.5) → ('13) 16조원 (中小 24)

4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1 원활한 가업승계로 장수기업 육성

가업승계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합리화**하여,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 육성 토대 마련

1 가업승계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완화 ('13.하, 상증세법 개정)

○ **(현황)**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이 매출 **2천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저해

구 분	독 일	영 국	미 국
기업 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공제금액	· (5년간 고용유지)85% · (7년간 고용유지)100%	· 비상장주식 100% · 상장주식 : 50%	· 가족사업 지분 (67.5만$(7억원)한도)

○ **(개선)**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시 공동상속 인정**

* 법률(민법)을 통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2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13.하, 상증세법 개정)

○ **동일업종 유지 조건**을 세세분류 → **세분류로 완화**하고, 사후요건 위반시 **추징방법***을 전액추징 → **차등추징**으로 변경

* (현행) 10년이내 사후요건 위반시 100% 추징 → (개선) 7년차 이내 **100%**, 8년차 **90%**, 9년차 **80%**, 10년차 **70%** 추징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중견기업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업 관련 개별 법률의 개정 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예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 **주요 내용**

① 중소→중견기업 성장부담 단계적 축소

○ 기술·판로·거래 등 **핵심 성장지원 분야**별로, **일정기간, 일정규모 기업** (예 : 졸업 5년, 3천억원 미만 등) 대상 **특례규정** 마련

* 예시 : (기술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거래관계)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법 등

○ 기존 제도 외에 신규 중소기업 지원 제도·사업이 **성장 촉진형으로 작용토록 모니터링·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간 협력을 위한 「(가칭) 중견기업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활용

② 중견→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촉진

○ 기술·인력·글로벌화 등 **중견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및 **업종·지역별 중견기업 육성**대책 수립·추진

* 중견기업 R&D프로그램, World Class 300 등의 추진근거 마련

□ **입법 추진계획 (안)**

○ **(法형식)**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법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 (예 :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 **(일정)** 연구용역 및 공청회 ('13.10) → 국회 제출 ('13.12~)

3 동반성장 노력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후배 벤처·창업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고, 성장단계에 위치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

1 민·관 공동투자 R&D 규모 및 참여 중견기업 대폭 확대 : ('13) 150억원 (8개 업체) → ('17) 550억원 (약 30개 업체) 이상

○ 중견기업 참여시 **정부 매칭비율을 확대 (50% → 60%)**하고, 중견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허용

2 주요 업종 단위의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전략 수립

○ 대표적 **업종의 전·후방 납품관계 분석** 등을 통해, 기술·시장 특성 등이 반영된 **업종별 기업 성장 로드맵 마련**

* **독립형** : R&D 등 혁신역량 강화 / **전속형** :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 지원 강화

* ('13. 시범사업) **자동차·전자** → ('14) 기계·화학·철강 등으로 확대

[사례] 국내 자동차 업계

☞ **수직계열화된 공급망 구조** : **2·3차** 중소 납품업체 약 6,000개 → **1차** 협력업체 886개 (84개 중견기업) → **완성차** 업체 7개 (세계 5위)

* 1차 협력업체중 특정 완성차 업체 전속기업 비율 : 45.8%(426개사)

☞ 세계 100대 차부품업체중 **한국기업은 4개**이나 모두 **대기업 계열사**

* 獨 Bosch(1)·Continental(3), 日 Denso(2)와 같은 독립형 중견기업 全無

3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경영 확산

○ 중견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견기업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정부 포상** 등 추진

* CSR 우수기업 중심, "(가칭) 중견기업 동반성장 리더스 클럽" 결성 ('13.11)

Ⅳ. 경제적 위상 변화

* 중소기업연구원 분석

□ 향후 우리 중견기업군은 건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고용·수출·매출** 등에서 **한국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① 중견기업 **고용**은 **('11) 82.4만명 (5.7%) → ('17) 140.1만명**로 1.7배 증가하여, **'17년 총고용 (1,787만명*)의 7.8%**를 차지

* 전체 종사자수 : ('11) 1,453만명 → ('17) 1,787만명 ('06~'11 증가율 3.5%적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中堅고용 (만명)	82.4	121.7	124.4	127.5	131.3	135.5	**140.1**
총 고 용 (만명)	1,453.4	1,504.4	1,557.1	1,611.7	1,668.2	1,726.7	**1,787.2**
비 중	5.7%	8.1%	8.0%	7.9%	7.9%	7.8%	**7.8%**

② 중견기업 **수출액**은 **('11) 603.3억불 (10.9%)→ ('17) 1,486.8억불**로 2.5배 증가하여, '17년 총수출 (9,350억불)의 **약 15.9%**를 차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中堅수출 (억불)	603.3	957.8	1,090.9	1,217.4	1,305.6	1,354.0	**1,486.8**
총 수 출 (억불)	5,552.1	5,480.8	6,605.5	7,204.9	7,858.7	8,571.8	**9,349.7**
비 중	10.9%	17.5%	16.5%	16.9%	16.6%	15.8%	**15.9%**

③ 중견기업 **매출총액**은 **('11) 373.7조원 → ('17) 930.8조원**로 2.5배 성장하여, **대기업집단 매출 1·2위를 합한 규모를 훨씬 상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中堅매출 (조원)	373.7	599.6	682.9	762.1	817.3	847.6	**930.8**
1·2위집단 (조원)	379.6	414.1	476.9	549.1	632.3	728.0	**838.3**

◇ 상기 **중견기업群**의 경제적 위상 예측은 **('11) 1,422개 (0.04%) → ('17) 4,000⁺개 (0.11%)**로의 성장 전망에 근거

Ⅴ. 향후 계획

□ 추진계획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성공 모델 발굴·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시**

○ **과제별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 과제별 실천계획

정책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13.11	중기청
2. 中小→中堅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		
2-1-① 초기 중견 中企간 경쟁시장 참여 허용	'14.상	중기청
2-1-② 中企 적합업종 규제 수준 조정 권고	'13.하	동반성장위
2-1-③ 고용 투자세액공제 성장단계별 차등화	'14. 1	기재부
2-1-④ 우수인력 확보 및 이직 애로 해소	'14. 1	중기청
2-2-①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13.하	기재부
2-2-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	'14.상	미래부
2-3-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	'13.하	증기청
2-3-②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계속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2-3-③ 하도급거래시 중견기업 보호 강화	'13.12	공정위
3.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1-① 정부 R&D의 중견기업 투자 확대	계속	산업부, 중기청
3-1-② 전문연구요원 중견기업 배정 확대	'13.12	병무청
3-1-③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13. 9	고용부, 교육부, 중기청
3-1-④ 연구개발 결과물 이전·활용 활성화	'13.하~'14.	미래부, 방사청, 중기청
3-1-⑤ 중견기업 지식재산(IP) 역량 제고	13.하	특허청
3-2-① Global Highway 프로그램 신설	'13.하	중기청
3-2-②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확대	'13.10	중기청
3-2-③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13.12	금융위, 중기청
3-3-① 글로벌 전문기업 특화형 서비스 개시	'13.하	산업부
3-3-② 중견기업 무역금융지원 확대	'13.11	한은, 수은, 무보
4.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4-1 가업승계 중견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13.하	기재부
4-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정비	'13.하~'14.	중기청
4-3 동반성장 노력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계속	산업부, 중기청